

|  |               |                     |        |                            |
|--|---------------|---------------------|--------|----------------------------|
| 기호   | 시보전 1414      | 기 안 용지              |        | 결급정 10 조 31                |
| 문서 번호  | 16802         | (전화번호)              |        | 보건사회국 장관 결사항               |
| 첨부 기한  | 기 안 자         |                     |        |                            |
| 제출 일자  | 1966.10.5     | 기 안 자' 새 영<br>변 상덕  | 결재     | <i>Ch</i>                  |
| 보존年限   | 기일 66. 9. 19. | 제재일자                |        | 10/5<br>1966. 10. 5<br>재   |
| 보  | 보건과장          |                     |        |                            |
| 조  |               |                     |        |                            |
| 기  | 위성계장          | 공고제 163호            |        |                            |
| 판  |               |                     |        |                            |
| 경  | 유             | 신                   | 작 안 참조 | 제                          |
| 수  | 신             | 조                   | 제      | 10/5<br>1966. 10. 5<br>증명부 |
| 참  |               |                     | 서      | 파 대 장 정 리                  |
| 제  | 목             | 66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        |                            |
| <p>1. 당시 시행 66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조리사에 관한<br/>규칙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며,<br/>     2. 이에 소요되는 예산(세입, 채출)집행은 공고후 응시자의 충수<br/>에 따라 산출하여 집행할것이며 신문광고로는 공고즉시 청구에 의하여 적<br/>불고지 합니다.</p> |               |                     |        |                            |
| <p>3. 조리사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br/>되 보건사회부령에 의한 양성기준에서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에 대하여 품<br/>질심사</p>   |               |                     |        |                            |
| <p>보건사회부령 제 166호 (65. 11. 25)에 의거 학과시험을 면제고자 합니다.<br/>첨부 66년 조리사 자격시험 계획서 1부. 끝. 215</p>   |               |                     |        |                            |

10/6  
163  
2017. 9. 4

16-1

38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행 66년도 제1회 ~~시험일자~~ 10월 10일 실시  
시험일자 1행 66년도 제1회 시험일자 10월 10일 실시

소리사에 관한 규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시행 66년도 제1회 조  
례자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함.

#### 1. 시험일자

##### 가. 학과시험

1966. 10. 27. 09.00 부터 (1일간)

##### 나. 실기시험

1966. 11. 3. 09.00 부터

1966. 11. 7. 까지 (5일간)

#### 2. 시험장소

구립조리 기술학교 (시내중구 충무로 3가 50번지)

#### 3. 시험과목

##### 가. 학과시험

- (1) 위생법 구
- (2) 공중 보건학
- (3) 영양학
- (4) 식품학
- (5) 식품 위생학

학과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

다만, 보건사과부령에 의한 소정에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  
을 면제하며 학과시험 합격자와 동일시 한다.

##### 나. 실기시험

- (1) 한식
- (2) 양식
- (3) 중국식
- (4) 일본식

16-2 364

216

상기 분야 중 일 분야도 한다.



#### 4. 응시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자.

- (1) 기숙사, 학교, 청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의장이 증명하는자
- (2) 음식점 영업중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여관, 호텔, 요리집, 카바레 또는 빠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자

#### 5. 응시절차

##### 가. 원서접수기간

6.10.15.부터 66. 10.21.까지 (7일간)

##### 나. 원서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보건사화국 보건과

##### 다.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소정양식) 1통
- (2) 조리업무종사자증명 (응시원서이면)
-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4) 식품위생법제 31조제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진단서.
- (5) 사진 (3×4센치 탈모 상반신) 4매
- (6) 수수료 (시 수입증지) 200원

##### 라. 수험표는 시험당일 수험장에서 교부한다.

##### 마. 원서접수기간 경과후에는 이 우여하를 불문하고 일체 접수치 않는자.

16-3 3/5

217

## 6. 학과 합격자 발표

## 가. 학과시험 합격자 발표 일자

66. 10. 31. 14:00 시정 후장에 제시한다.

## 나. 족종 합격자 발표 일자.

66. 11. 11. 14:00 시정 후장에 공시한다.

## 7.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07:30 까지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볼펜, 만년필, 잉크통, 연필제외)와 실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식도, 위생복, 위생모 등)를 치하하여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나. 수험개시시간에 치하한자는 수험을 불허한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국나 각 구보건소 위생과에 문의로 토록 한다.

## 8. 시험 합격 기준

## 가. 학과시험 합격 기준

시험 주목의 출점이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며 과학은 10점 미만으로 한다.

시험 주목의 출점이 평균 40점 미만이거나 주락이 전 과목에 1 과목이라 도 있으면 불합격으로 정한다.

## 나. 실기시험 합격 기준

실기시험 위원 2명이 체점을 통하여 600점 만점에 360점 이상을 합격 으로 하며 360점 미만을 불합격으로 한다.

## 9. 시험 위원 구성

가. 본 시험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사학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국 장으로 한다.

나. 학과시험 위원은 과목별로 1인씩 하며, 실기시험 위원은 분야별로 2인 씩으로 한다.

나. 학과시험 위원은 과목별로 당시 보건 관계 간부로서 권위 있는 자  
노하여 실기시험 위원은 조리사간회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 종일 분  
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1명과 대학영양학과 교수로서 조리사에  
관한 구체 재료 조7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과부장관에 승인을 얻어  
위촉 한다.

라. 시험위원 선정 및 위촉은 별도 행한다.

#### 10. 시험문제 선정

가. 학과시험

시험 위원으로부터 출제권 40문제 중 20문제를 시험위원과 부위원장  
의 직권으로 선정하여 답안지를 작성한다.

나. 실기시험

각분야별 시험위원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시험당일 즉  
석에서 선정 재기하여 시행한다.

#### 11. 공고방법

가. 일간신문 2기사에 1회씩 공고한다.

나. 공고안 벌침

#### 12. 채입예정액

공고후 응시자 총수에 의거 산출함.

#### 13. 소득예산

가. 응시자 총수에 의거 소득예산을 산출요구한다.

나. 자격시험 요령 신문 공고로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신문공고료

(1) 一金或萬八千원

| 종별    | 소요금액   | 산출근거                    | 지출비목                           | 지출방법              |
|-------|--------|-------------------------|--------------------------------|-------------------|
| 신문공고비 | 6,000원 | 100원×2단<br>X70행<br>X 2사 | 행정비, 시무행정<br>일반사무<br>수수료 및 수선비 | 지출방법 청구에<br>의한 지불 |

다. 본 시험중 실기시험용 재료구입에 대하여는 노포마산 범회내에서  
전도자금으로 실행한다.

220

07

15-6 368

시 험 관 리



가. 시험위원회 직무

| 부 서            | 위 원 명              | 위 족               | 직 무                                       |
|----------------|--------------------|-------------------|---|
| 위원장            | 보건사학국장             |                   | 1. 위원장은 시험기관중 위원과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부위원장           | 보건과장               |                   | 1. 위원장을 보좌하며 학과 및 실기시험 문제답안의 보안을 책임진다.    |
| 간 사            | 위생계장               |                   | 1. 시험실 시에 따른 준비 및 시험장을 관리하며 관계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 학 과 시 험<br>위 원 |                    | 별도 위촉<br>(5학과 5명) | 1. 담당과목에 출제 및 채점에 책임을 진다.                 |
| 실 기 시 험<br>위 원 |                    | 별도 위촉<br>(4분야) 8명 | 1. 담당분야에 출제 및 채점의 책임을 진다.                 |
| 서 기            | 보건과<br>위생계직원<br>전원 |                   | 1. 시험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나. 학과시험 출제 낭립

- (1) 위촉받은 학과 기합위원은 담당과목에 대한 시험 문제 20문제를 출제하여 과목별로 30분 이내에 해답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 (2) 출제범위는 국립학교 출업정도의자에 알맞는 문제라야 한다.
- (3) 출제한 시험 문제는 당해시험위원이 일봉날인 하이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시험장에 관리 및 감독

- (1) 보건과직원 및 각 구보건소 직원 1명씩을 차출하여 각 시험장 공과 2명씩으로 감독원을 배치한다.

- (2) 감독원은 "이원 시험장이 외에 시험장 출입을 금하며 장에서의 시험답안지를 수집하여 수집 책임자에게 인도하고 시험장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발하는 책임을 지며 부정행위자를 시험 위원회에 인계 짜장시키는 책임을 진다.
- (3) 위원회 사기는 감독원의 배치 및 답안지 수집에 책임을 진다.
- (4) 시험답안의 체점은 당해 시험문제를 출제한 학과시험 위원이 한다.

제 1안

수신 구립조리 기술학교장

제목 동 건

별첨공고문과 같이 당시 시행 66년도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실시  
코자 하는바 쿠교를 학과기합 및 실기시험장으로 사용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기합 위원 추천

1. 당시 시행 66년도 조 1사 자격기합을 별지 공고문과 같이 실시  
하는바 쿠하를 조리사학과기합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오니 66. 10. 14.  
까지 이력서 2통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수신처. 서가 34-72. 43.

제 1 장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시험위원 추천 의뢰

당시 시행 66년 5월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벌지 공고문과 같이 실시  
케 되어 조리사 실기시험 위원을 추천의뢰하오니 66. 10. 14. 까지 추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기시험 위원

양식, 한식, 중국식, 일본식 각 1명

나. 실기시험 위원의 자격

(1) 조리사 민족증 소지자로서 같은분야 5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2) 대학 영양학과 교수

다. 구리서류. 이력서 2통 (사진첨부)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대한요식업 협회 중앙 회장

한국조리사 협회장

덕성여대

명지여자대학

건국대학

숙명여자대학

수도외대

이화여자대학

구립 조리기술학교장



제 5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 실시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문과 같이  
시행호자 하오니 널리 알리며 다수 응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1부. 끝.

수신처. 1. 보건사회부 상관

2. 나 2-11

3. 대한요식업 협회장

4. 대한숙박업 협회장

5. 캐바레 협회장

6. 한국조리사 협회장

7. 구립조리기술학교장

8. 서울고등기술학교장

제 6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동진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고안과 같이  
실시하니 관계기관에 널리 알려 다수 응시도록 할것.

수신처. 서사 34-42.

제 7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보건사회국장

제목 동진

당시 시행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 시험을 별첨

10.6  
공고문과 같이 '시하오니 각 신문, 라디오로 독 조치하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문 세 호 1부. 끝.

서울특별시 공고 제 16-3

1966. 10. 6  
서울특별시

조리사에 관한 규칙 제 1조의 규정에 의하여 66년도 제 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966. 10. 6  
서울특별시장 1966. 10. 6

### 1. 시험일시 및 장소

가. 학과시험 66. 10. 27. (1일간)

나. 실기시험 66. 11. 3. 부터 66. 11. 7. 까지 (5일간)

다. 장소 구립조리기술학교 (중구충무로 3가 50)

### 2. 시험 과목

가. 학과시험; 위생법규, 공중보건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나. 보건사과부정에 의한 강습을 필한자에 한하여 학과시험을 면제하며 학과시험 합격 후에 한하여 실기시험을 수험할 수 있다.

나. 실기시험; 한식, 양식, 궁극식, 일본식 중 1분야.

### 3. 응시 자격

가. 국민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1)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등의 급식시설 또는 공공기관에서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음식점 영업 중 1월을 통한 1일 평균 100인분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어관, 호텔, 요리점, 캐파리, 또는 빠에서 음식물의 조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시설의장이 증명하는 자.

#### 4. 응시절차

##### 가.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1) 66. 10. 15. 부터 66. 10. 21. 까지 (6일간)

(2) 서울특별시 보건과 위생계

##### 나.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종

(2) 조리업무 종사자 증명(응시원서 이면)

(3)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4) 식품위생법 제 1조 제 1호 내지 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보건소장의 간단서.

(5) 사진 (3x4센치 틸모 상반신) 4매.

(6) 수수료 (수입증지) 200원

##### 5.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07.30 까지 학과시험에 필요한 필기구(볼펜, 만년필)와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구(식도, 위생복, 위생모 등)를 참하여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시 보건과 (22.9067)에 문의할 것.

조사자격시험 응시원서

(106-10)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식

주 소

성 명

생년 월 일

금번 경시에서 시행하는 조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자격요건에  
확인을 받고 별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1. 응시구분                      식 부

106. 10. .

지원자                              인

g.c

229

16-15 376

증명서  
용시원서 이면

조리업무 종사자 증명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1. 종사기간. 196 . . . 부터  
196 . . . 까지.

2. 종사직위.

상기자는 당 시설(기관)에서 조리업무에 상기기간 중 종사한 사실  
이 있음을 증명함.

1966. . .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성 명. 인

\* 기관인 경우는 필히 기관직인을 받을 것



230

11

16-15 377